#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22

발의연월일: 2024. 12. 23.

발 의 자: 장종태·박용갑·김 윤

문진석 · 김기표 · 황정아

장철민 • 박정현 • 조승래

안규백 · 김남희 · 김선민

이원택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매달 일정 금액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물가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하여 아동수당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함. 참고로,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5.1%와 3.6%였음.

또한, 아동수당의 수급연령이 8세 미만의 아동에 국한되어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아동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 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금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아동수당의 수급연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함으로써 아동수당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 등).

법률 제 호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8세"를 "18세"로, "매월 10만원"을 "매월 10만원 이상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아동수당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한 이상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그 전년도에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된 아동수당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8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8세"를 "18세"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8세"를 "18세"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8세"를 "18세"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8세 미 지급액) ① -----18세-------매월 10만원 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이상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아동수당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 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액----.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 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이상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그 전년도에 2세 미만의 아동 에게 추가로 지급된 아동수당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 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은 <u>8세</u> 미만 아동의 보호자
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ㆍ
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
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u>8세</u>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④ (생 략)

제7조(조사·질문 등) ① ~ ④ 저 (생 략)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은 <u>8세</u>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주민

<u>1</u>
8세
②
<u>18세</u>
③・④ (현행과 같음)
메7조(조사·질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5
<u>18</u> 2]

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 용할 수 있다.

#### ⑥·⑦ (생 략)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 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 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8 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 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 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 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 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 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 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 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 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18×11
<del></del>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